# 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제1차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7. 12) 상정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제1차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7. 12) 원안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・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○ 「지방자치법」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9조 → 제26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

(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 단서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지방자치법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?	○ 지방자치법이 2007. 5. 11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.

## 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- 없 음

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 6. 소수의견

○ 없 음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 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번	안호	제117호
의	결	2007. 7. 19
년월	[일	(제137회)

제출년월일: 2007. 6. 2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○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ㆍ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○ 「지방자치법」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9조 → 제26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 단서)

### 부천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조례 ·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"를 각각 "「지방자치법」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"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번호)"를 "(공포번호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지방의회규칙"을 "지방의회의 규칙"으로, "표지"를 "표시"로 한다.

제7조 단서 부분 중 "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26조제6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8조의2 중 "적어도 30일"을 "30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
혂

행

부천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 │ 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제3조(조례) ① (생 략) 제3조(조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 ② 「지방자치법」제26조제6항 후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 단에 따라-----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「지방자치법」제26조제6항 후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단에 따라----기재하고.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 제6조(번호) ① • ② (생 략) 제6조(공포번호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 ③ -----레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 ----기방의회의 규칙---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 되.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 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. -----표시------제7조(공포방법) 조례와 규칙의 공제7조(공포방법) -----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----「지방자치법」제2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의장 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 의 게시로써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주민권익보호) 주민의 권	제8조의2(주민권익보호)
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	
관련되는 조례, 규칙 등은 긴급	
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	
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	
포일로부터 <u>적어도 30일</u> 이 경과	<u>30일</u>
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	
한다.	